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1899호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공 고

○ 공 고 제 7 8 1 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기 획 예 산 과 2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홍보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 2024-781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3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15일

남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 국민권위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3. 12.)」에 의거하여, 지적사항인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내 제척·기피 규정을 보완하여 사전 예방적 부패방지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 120대 국정과제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운영체계 구축」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위원회 존속이 필요하나 안건 발생빈도가 낮은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의 제척·기피 규정 보완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 위원회 비상설전환 :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6층 기획예산과
- 연락처 : ☎ 453-2067, FAX 453-205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3. 12.)」
-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운영체제 구축」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4년 6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국민권위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3. 12.)」에 의거하여, 지적사항인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내 제척·기피 규정을 보완하여 사전예방적 부패방지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 120대 국정과제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운영체계 구축」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위원회 존속이 필요하나 안건 발생빈도가 낮은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의 제척·기피 규정 보완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 위원회 비상설전환
: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3. 12.)」
-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운영체계 구축」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남동구 조례 제 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의 개정)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2조(「남동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민관협력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남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9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 등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9조(제척·기피·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u>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u> 2. <u>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u> 3. <u>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u> 4. <u>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u> 5. <u>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

<u>② 이해관계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u>	<u>②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u>
<u>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u>	<u>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u>

제2조(「남동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u><신설></u> <u>④ (생략)</u> 제4조(위원의 임기)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 제7조(회의 등) ① <u>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u>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u> <u>⑤ (현행 제4항과 같음)</u> <u><삭제></u> <u><삭제></u>

<u>이 된다.</u> <u>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u> <u>임시회의로 구분한다.</u> <u>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u> <u>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u> <u>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u> <u>원의 3분의 1 이상의 회의개최</u> <u>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u> <u>④ 삭제</u>	
---	--

제3조(「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제8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 ③ (생략) <u>④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u> <u>상시와 재난발생 시로 구분하여</u> <u>운영한다.</u> <u>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u> <u>수행</u> <u>2. 재난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u> <u>동원, 피해복구, 피해주민 지</u> <u>원,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u> <u>응 활동 협의 및 전개</u>	제8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민관협력위원회는 안전이 발</u> <u>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u> <u>후 자동 해산한다.</u>

[참고자료]

□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3. 12.)

V. 조치사항

□ 권고 대상기관 : 61개 자치구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조치기한 : '24. 8. 31.

개선권고 과제	권고 대상기관(가나다 순)
14.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공정성 제고	
① 위원회 심의 안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참여 배제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 제척 규정 신설 또는 제척 기준 보완	(광주) 광산구, 남구, 북구, 서구 (대구) 중구 (대전) 대덕구, 동구 (부산) 해운대구 (서울) 금천구, 서초구, 종로구, 중구 (울산) 중구 (인천) 남동구, 중구
- 기피 규정 신설 또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피 여부를 결정하고, 기피 대상 위원은 기피 의결에서 배제하도록 규정 개선	(광주) 광산구, 남구, 북구, 서구 (대구) 서구, 중구 (대전) 대덕구, 동구 (부산) 해운대구 (서울) 금천구, 서초구, 종로구, 중구 (울산) 중구 (인천) 남동구, 연수구, 중구
- 회피 규정 신설 또는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선	(광주) 광산구, 남구, 북구 (대구) 중구 (대전) 대덕구, 동구 (부산) 해운대구 (서울) 강서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마포구 서초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울산) 중구 (인천) 중구
② 직무상 비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한 해촉 규정 신설	(광주) 남구 (대전) 대덕구
③ 위촉위원 임기, 연임 제한에 관한 규정 마련	(대구) 서구, 수성구 (대전) 서구, 유성구 (부산) 사하구, 서구 (서울) 성북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울산) 남구, 중구 (인천) 부평구, 중구

□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운영체계 구축

□ 과제목표

- 정부 운영과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일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 구현
- 국민의 권리구제와 일상 편의를 증진하는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실현

☐ 주요내용

(위원회 통·폐합) 각종 부처·지자체 위원회를 효율성 차원에서 정비

- 위원회 운영실태를 원점 재검토, 개최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는 통·폐합, 기능전환 등 정비하고, 운영 실태와 정비 실적을 국민에게 공개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제15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③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회로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